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1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98. 9. 16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장상진)

가. 제안이유

○ 국제도시간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파의 마찰 등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

• 현 행 :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

• 개 정 : 부천시 국제자문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?	<input type="radio"/> 외국인들에게 정부 공무원, 또는 해외공관원으로 오해를 일으켜 교민 사회의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여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

의안번호	제17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1

제출자 : 부천시장

 개정구분 : 부분개정 개정이유

- 국제도시간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

 주요골자

- 명칭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
 - 현 행 :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
 - 개 정 : 부천시 국제자문관

 조례개정(안) :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 관련 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

- 관련부서 지시사항(외무부, 내무부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하고, 제1조중 “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(이하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이라 한다)제에”를 “부천시국제자문관(이하 “국제자문관”이라 한다)제에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, 동조 제2항중 “국제협력관련”을 “국제자문관련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, 제5조 및 제6조중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“국제교류협력활동”을 “국제교류자문활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 <u>국제자문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<u>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(이하 “명예국제협력관”이라 한다)제에</u>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..... <u>부천시국제자문관(이하 “국제자문관”이라 한다)제에</u>
제2조(임무) ①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은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 ②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은 관내 <u>국제협력관련</u> 방문단의 활동주선,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 ③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은 관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 ④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은 국내·외 각종 공사(公私)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	제2조(임무) ① <u>국제자문관</u> ② <u>국제자문관</u> <u>국제자문관련</u> ③ <u>국제자문관</u> ④ <u>국제자문관</u>

제3조(위촉대상)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 내 거주 교민으로서 국제교류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제3조(위촉대상) <u>국제자문관</u>
1~3(생략)	1~3(현행과 같음)
제5조(품위유지)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 부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.	제5조(품위유지) <u>국제자문관</u>
제6조(초청 등) 시장은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교통비,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.	제6조(초청 등) <u>국제자문관</u>
제7조(경비지원) <u>명예국제협력관</u> 에게 <u>국제교류협력활동</u> 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경비지원) <u>국제자문관</u> <u>국제교류자문활동</u>